

제3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2일 (수) 11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2.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 1면
2.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66) 2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

(11시 01분)

○위원장 김선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의원님께서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형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절차 등 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연합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자의 보안 교육과 보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선광** 구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봉석** 초광역행정산업 전문위원 최봉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21일 구형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외의 사람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수행을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출장 계획서, 출장의 필요성, 방문 기관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내실화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한 자료를 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여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알권리 보장 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을 위한 객관성과 내실화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조례안 입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최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위원님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이수현 연합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 **신영호 위원** 처장님, 이거 법은 없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법은 없고 공무원 같은 경우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복무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 **신영호 위원**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그렇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신영호 위원** 그런데 이번 광역연합의 조례안은 일반 시도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저희 조례는 4개 시도와 거의 비슷하게 조항을 담았고요, 좀 다른 부분은 10조에 보면 출장결과보고서를 저희는 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국외 출장 관련 정보 공개 시스템에 올린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조례가 아니라 규정으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 **신영호 위원** 규정으로 하는 시도도 있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 **신영호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공무국외출장 가지고 많이들 비판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담으신 거예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공무국외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원의 그런 부분도 다 담았고요, 객관적으로 예산 낭비 없이 공무국외출장 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안을 다 담은 내용입니다.

○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례대로 현실하고 안 맞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공무국외출장이.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 다 개선해서 받으신 거예요?

현실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원이 비판한 거 아니에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맞습니다.

○**신영호 위원** 어떤 거지요, 그게?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지금 사실 공무원들은 국외출장 관련해서는…….

○**신영호 위원** 예산이 있어도 우리가 다 쓸 수 없는 구조였잖아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관련된 그런 국외 여비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신영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다 개선해서 하신 거예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그런데 너무 러프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담은 사항입니다.

○**신영호 위원** 기존의 개선 사항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에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기존에 불편하셨…… 그러니까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은 정확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조례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지요?

소위 예산 부풀리기 아니었어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출장 경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 기준에도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담아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 위원** 심사위원회는 그거에 대해서 적합하다 안 하다만 얘기하지 감사원이 월권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언급하기…….

○**신영호 위원** 아직 안 내려왔지요,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데, 내려오는 조치 사항을 보면서 불합리한 거는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조성태 위원** 조성태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조항도, 금방 전에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 모법이 없는데 저희가 규칙이나 규범에 관련돼서 각각 된다는, 아쉽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고요. 저 또한 충청북도에서 이수현 사무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외 연수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었어서 혹시 이 조항에서 답을 수 있다면 -만약에 같이 갔던 의원이 됐건 아니면 직원들 입장에서- 환수 조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전에 조항이 신설된 거 쪽 봤더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이 아니면 갔던 직원 일행 중에서 자구책으로 환수 조치나 이런 것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릴까요.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당한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 조항 12조에 담아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저희가 환수 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충북에서도 그거 때문에 한 2년째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

(11시 10분)

○**위원장 김선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계관직의 명칭과 소모품 기준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경리관’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 명칭 현행화를 위해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별표 1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소모품 구분 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봉석** 초광역행정산업전문위원 최봉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1일 김현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5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과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7조의 ‘경리관’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1 중 품종구분 기준 (2) 소모품 ④의 ‘취득단가 10만원 이하’를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수정한 사항은 법령 및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비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직의 명칭 및 소모품 기준 변경, 어려운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표현과 문장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 및 내용 측면에서 타당하고,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조례 개정예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선광** 최봉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미 의원님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이수현 연합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게 언제 제정이 된 거지요?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물품 관리 조례는 지난 저희 연합 출범하기 전에 지난해 12월에 추진단이 있을 때 했는데.

○ **유인호 위원** 12월에 제정을 한 거고 이번에?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이번에 일부 용어에 대한 부분과 맞춤법에 관련된 부분, 알권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 일부 개정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 **유인호 위원** 예,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자구 수정이에요, 용어 정리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4조2항 같은 경우에 삭제를 했어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죄송합니다. 조항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인호 위원** 4조에 보면 관리사무의 위임. 2항 이거 삭제를 하는 거지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이 부분은 시장·군수 소속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연합과는 무관한 조항이라 삭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물론 신중하게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시겠지만 제정하고서 채 몇 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삭제할 조항들이 나온다는 건 검토 단계에서부터 살펴보는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향후에 혹시 집행부에서 검토할 조례들이 있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왜 삭제를 했는지 사실 궁금해서 여쭙봤던 건데 그거는 답변을 주셨으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만 살펴주세요.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예,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유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선광**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구형서 김선광 김현미 신영호 안경자 유인호 조성태

○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석

○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 이수현

초광역자치과장 박승일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